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지방세법」 제7조제 15항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신청 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 또는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예규에 마련함
- 그 밖에 예규의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안 5의2 가 신설)
- 다만,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함 (안 5의2 나 신설)

3.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소명하는 첨부정보(예: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사하여 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 등)가 제공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제목 중 “등록면허세” 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로 하고, 같은 6. 가. 전단 중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 를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이하 6.에서 같다) 미납 통지” 로 하며, 같은 6. 나. 전단 중 “등록면허세” 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②(취득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5의2. 가.는 2016.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5의2. <u>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u></p> <p>가. <u>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나. <u>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소명하는</u></p>

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록면허세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첨부정보(예: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사하여 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 등)가 제공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이하 6.에서 같다) 미납 통지-----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6